

건설폐기물관리대장																				
(①건설폐기물의 종류:)																	(단위: 톤)			
②발생내역				③자가처리 내역							④위탁처리내역						⑤		결 재	
연월일	성상	발생량	발생량 누 계	연월일	처리량	중간처리		최종처리		처리량 누 계	연월일	위탁 처리량	운반자	처리자	처리 방법	위탁 처리량 누 계	보관량			
						처리 방법	처리량	처리 방법	처리량											

(뒤 쪽)

<작성요령>

1.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, 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, 건설오니, 폐금속류, 폐유리, 폐타일 및 폐도자기, 폐보드류, 폐판넬, 건설폐토석, 혼합건설폐기물,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(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양은 중량단위인 톤(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)으로, 성상은 고상·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3.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·소각·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,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·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4.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,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“배출신고자”로 기재하며,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(중간처리업소, 최종처리업소,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)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